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편집장 : 문화공보관

전화 : 72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 725-6090

제 866 호

1981.11. 4

시보

차례

◎ 규 칙	
제 1919 호 :	서울특별시산림및개발제한구역보호소감시원근무 규칙 3
제 1920 호 :	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9
제 1921 호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중개정 규칙 10
제 1923 호 :	서울특별시제 1 회지하철공채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30
제 1924 호 :	서울특별시구방공위원회규칙폐지규칙 31
제 1925 호 :	서울특별시시정개발담당관운영규칙폐지규칙 31
제 248 호 (교육규칙)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그소속기관에두는 지방공무원의청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31
◎ 고 시	
제 392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32

<이년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935

제 393 호 :	주택개발을위한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및건축계획 승인	32
제 394 호 :	도시계획사업 (종합의리시설) 시행허가	33
제 395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변경)	34
제 396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변경)	34
제 397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35
제 398 호 :	하천진흥 (지하철 4 호선동작점차장) 공작물설치허가 ...	35

◎ 공 고

제 289 호 :	특정연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취소	36
제 292 호 :	도시계획사업 (유통업무설비) 준공공고	36
제 294 호 :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에정지변경지정공고	37
제 295 호 :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에정지변경지정공고	37

◎ 사 명

규 칙

서울특별시 산림및 개발제한구역 보호
조소 감시원근무 규 칙 을 이에 공포한
다.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
1981 년 11 월 4 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919 호

서울특별시 산림및 개발제한구역
보호조소 감시원 근무규칙

서울특별시 산림및 개발제한구역 보호
조소 감시원근무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
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피해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등 자연보호
를 위하여 두는 감시조소 근무직원
(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의 복
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2 조 (직무) 감시원은 배치된 구역
을 관할하는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구역을 순찰하며, 다음 사
항을 예방 단속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개발및 금
지행위 방지

- 가. 건축물의 건립
- 나. 공작물의 설치및 가건물의
건립
- 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 라. 토지형질변경및 토식채취
- 마. 입목 벌채
- 바. 기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
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산림보호

- 가. 임야내 무허가건물의 건립및
공작물의 설치단속
- 나. 도벌및 무허가벌채 단속
- 다. 산림훼손방지
- 라. 임산물의 불법채취및 굴취단속
- 마. 산화경방
- 바. 산림병해충예방및 방제

3. 자연보호

- 가. 산림내 행락질서유지
- 나. 산림내 갈상량위 방지
- 다. 입산금지구역내 무단입산자통제
- 라. 야영장및 부대시설관리
- 마. 산림및 자연보호 시설관리
- 바. 산사태등 위해발생 지역점검
- 사. 기타 산림및 자연경관을 저
해하는 행위

4. 야생조수보호및 불법수렵행위단속

5. 기타 상사로부터 수명받은 사항

제 3 조 (직원의 구성) ① 감시원은
정규 농림직및 고용원 또는 정원
경찰로 구성한다.

② 각조소에는 정규 농림직 1 명 과

고용원 또는 잠원경찰 2 명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1 명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초소장은 정규 직원으로 하고 당해 초소에 배치된 감시원을 지도 감독한다.

다만, 초소장은 내근을 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시원을 담당 초소에 상주케 할 수 있다.

제 4 조 (근무요령) ① 배치된 감시원은 담당초소와 그 주변환경을 항상 청결히 하고 다음의 장부를 비치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별첨 1 호서식)
2. 관할구역 현황도 (1/5,000 지형도에 다음 사항을 표기)
 - 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 나. 감시초소
 - 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번호표시)
 - 라. 순찰합 및 순찰코스
 - 마. 등산로 및 야영장과 부대시설
 - 바.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
 - 사. 우범지역
 - 아. 주요 허가지역
 - 자. 기타 필요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관리대장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소정서식)
4. 임야내 무허가건물대장 (별첨 2 호서식)
5.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물 관리대장 (별첨 3 호서식)
6. 인허가대장 (별첨 4 호서식)
7. 불법행위적출 및 처리대장 (별첨 5 호서식)
8. 순찰명시판 (별첨 6 호서식)

② 감시원은 다음 요령에 의거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불법행위 예방 단속에 임하여야 한다.

1. 감시원은 채복 (정복 또는 근무복) 정모, 체과 등 소정의 복장과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부착 또는 소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2. 감시원은 담당구역 순찰시 순찰명시판에 순찰시간, 코스, 지역 목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초소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3. 감시원은 1 일 1 회 이상 담당구역을 순찰하여야 하며 관내요소에 설치된 순찰함에 별첨 7 호서식에 의한 순찰카드를 비치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4. 감시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매주 월요일에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보고 및 조치) ① 감시원은 담당구역내 위법행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법행위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법행위 중단
2. 위법사항조사
3. 원인자로 하여금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
4. 증거품 및 파해품 수집보관
5. 가해자 색출 및 신분확보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감시원은 제 1 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명 받았을 때에는 지시받은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p>보고하여야 한다.</p> <p>③감시원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던 지역을 수시 확인하여 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p> <p>④감시원이 담당구역을 변경 배치 받았을 때에는 초소장 입회하에 전, 후임자간에 다음 사항을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 4 조 제 1 항 각호에 의한 담당구역 현황 2. 관제도서 및 비품장비 3. 위법행위적출 및 미조치현황 4. 기타 필요한 사항 <p>제 6 조 (벌칙) ①감시원이 근무중</p>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 조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의로 위법행위를 묵인하였을 때 2. 근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을 때 3. 위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조치 및 사후관리를 태만히 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이 규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p>⑤정당한 사유없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나 산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조치한다.</p>	
<p>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p>		<p>산림사고 (산화포함)</p>	
발생건수	문 제	발생건수	문 제
1건	경 고	월 1건	주 의
9건이내	훈 계	월 3건이내	경 고
10건이상	징 제	월 9건이내	훈 계
		월 10건이상	징 제
<p>단,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는 중잉 일제조사, 자체감사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 48 조 제 1 항에 의한 특별한 단속시 적출사항을 적용한다.</p> <p>신발생건물일 때는 서울특별시 신발생무허가전불 단속 규정에 준한다.</p>		<p>부 칙</p> <p>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산림보호초소근무직원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 1040 호 70.7.31) 은 이를 폐지한다.</p>	

(제 3호서식)		시설물관리대장						
시설물명	위 치		수 량 (규모)	설치년도	관리(보유) 상 태			
	동	지 번				속 칭 명		
기재요령 : 산림내 공익공용시설과 G.B 관리 시설물별로 구분기재 철조망, 펜스, G.B 경계 표석 (번호기재) 야영장과 부대시설, 쓰레기소각장, 동달샘, 안전시설, 휴식동 산장, 공중변소 순환, 각종 입간판등								
(제 4호서식)		허가대장						
허가 구분	수허가자		허 가		내 용	특 기 사 항		
	주 소	성 명	년월일	번호			위 치	종 별
기재요령 : 허가구분...건축물의 건축, 임목벌채, 토지, 형질변경등으로 구분 기재 허가상별...신축, 증축, 개축, 이축, 대수선, 간벌, 피해복, 지장복 등으로 구분기재								

(제 5호서식) 불법행위적출및처리내장

적		출					처			리	비	고
행위구분	위 치	적출일시	발생일시	행위내용	행위자		일자	기관	내용			
					주소	성명						
<p>기재요령 : 행위구분...빌채, 임야훼손, 건축물의 건축능, 개발제한구역 및 산림피해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 유형을 기재 행위내용...목적, 용도, 규모, 구조, 수량, 처분등 6.하원칙에 의거 간략하게 기재 처리기관...승치, 고발등 사전인수 기관명</p>												

(제 6호서식) 순찰명시판

<호소번호 > 198 년 월 일

순찰시각	순찰코스	순찰지역	순찰목적	기타사항

(제 7 호서식)		순찰카드														
<초소번호:>		(월분)										<순찰일번호:>				
일자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감시원																
초소장																
관리직																
일자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감시원																
초소장																
관리직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임조례시행규칙
중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영수인
1981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920 호

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임 조례 시
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6조의 2중 제 6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부 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영수인
1981년 11월 4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921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 양정에 관한규칙 개정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정규정 제 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이하 " 공무원 " 이라 한다) 의 징계의결요구 및 의결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징계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징계양정의 기준) ①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는 징계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 1 의 징계양정기준과 별표 2 의 개별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및 의결하여야 한다.

②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 구분은 별표 3 의 기준에 의한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유추 적용한다.

④징계사건을 징계의결요구 및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최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유지와 깨끗한 공직자 사회의 구현 및 기상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작기관의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⑤위 기준은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 67 조제 1 항 및 동강 인사규칙 제 7 조제 1 항등에 참작할 수 있다.

제 3 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3 의 문책 순위 1 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 및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4 조 (행위의 누가)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공무원임용령 제 32 조 제 1 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34 조 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인용제한 기간중 (정직: 18 월, 감봉: 12 월, 전책: 6 월)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요구 및 의결할 수 있다.

②승진인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요구 및 의결할 수 있다.

제 5 조 (행위의 경합)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요구 및 의결할 수 있다.

제 6 조 (정상참작) 징계권자는 징계 혐의자의 추진중이던 업무목적, 행위발생의 동기, 소행, 근무성적, 공적사항, 개선의정,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등 제반여건을 광범위하게 참작하여 제 2 조의 기준을 경감 적용할 수 있다.

제 7 조 (징계의 감경)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복문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 및 경고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하며 행위당시의 어전, 기타 사회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향응수수물을 제외하고는 직무에 관련한 금품수수 및 징계의결요구기관에서 승점 정화대상으로 지정된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 1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6 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시장 (장관급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함)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고별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제 8 조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기록요령)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절 제 2 조제 7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록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와 그 이유를 제 2 조 및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기준 및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적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p>제 9 조 (징계의결요구시 확인사항)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 구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중점 정 화대상으로 지정된 비위대상여부와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유무등 을 기재한 별표 5 호서식의 확인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추문란에 "불문 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 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p>
<p>제 10 조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징 계위원회 (인사위원회) 가 제 3 조 내지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 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p>	<p>제 11 조 (국가공무원에의 준용) 서울 특별시에 근무하는 6급이하 국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의결 에 있어서도 제 2 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 다.</p>

(제 2 조 관계법표 1)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도및과실 비위의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 가 있는 경 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 고 경과실이거나, 도가 경하고 중과 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 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 계질서 문란 나. 기 타	파 면	해 임	정 직 - 감 봉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파 면	정 해 임	감 봉	"
3. 직장이탈금지 위반	파 면 - 해 임	정 직	감 봉	"
4. 친절 공정의무 위반	"	"	"	"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 봉 - 견 책
6. 정령의무 위반	"	"	"	"
7. 품위유지 의무위반	파 면 -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 지의무 위반	"	"	"	"
9. 집단행위금지 위반	"	"	"	"

※ 개별 양정기준별표 2 : 별첨

(제 3 조 관계별표 3)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과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 정 책사항)	4	3	2	4
·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1	2	3	4
·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제 6 조 관계별표 4)				
징 제 양 정 감 경 기 준				
제 2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 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제양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제양정		
파	면	해	임	
해	임	정	직	
정	제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불문 (경 고)		

(별표 5)

확 인 서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가. 소속 및 직위
 (1) 현 재
 (2) 혐의당시
 나. 직 급
 다. 성 명 (한글) (한자)

2. 제 2조제 2항 해당비위 여부
 가. 금품 및 양용수수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나. 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3. 제 4조해당 공적과 징계유무

공 적 시 한			징 계 사 항 (경고조치포함)		
포상일자	포상의종류	시 행 장	일 자	종 류	발 령 청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및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 위) (판인)

구분	징 제 사유	징 제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정직	감봉	전책	
	나. 직무유기 (1) 고의, 중과실 (2) 과실 (정상참작) 다. 민원인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친절로 물의 야기 3. 품위손상 가. 사기, 절도, 강도, 강간 나. 도박 (1) 상습적인 경우 (2) 일시적인 경우 다. 축첩 (자녀를 두기 위한 순수한 사실상 동거 제외, 단 직접 이해관계당사자 동의시) 라. 음주, 추태 (1) 공무중 음주 추태 (2) 음주 추태로 인한 품위손상 (경범죄등) 마. 고급 유흥장 출입 (1) 직무와 관련업자와 요정출입 (2) 상습적인 고급 요정출입 바. 폭력, 가혹행위				감봉 이상	전책 이상	
		파면					
		파면			감봉 이상		
		파면					
				정직 이상	감봉 이상	전책 이상	
						전책 이상	

구분	징 제 사 유	징 제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정직	감봉	
8. 문서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 가. 공문서 입주, 번조	(1) 고 의	파면				
	(2) 중대한 과실					
	(3) 과 실					
나. 공문서 파기	(1) 고 의	파면				
	(2) 중과실					
	(3) 성과실					
다. 공문서 영본	(1) 고 의	파면				
	(2) 중과실					
	(3) 과 실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	○ 허위부명	해임 이상				정상에 따라 작용
	○ 공증증서 불실기재					
마. 공증증서 불실기재	○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해임 이상				
	(1) 고의, 중과실					
바.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1) 고의, 중과실	해임 이상				
	(2) 과 실					

구 분	징 제 사유	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사. 비밀문서및대외비문서관리 (1) 분.신 (2) 비밀문서방치 (3) 대외비문서방치 (4) 관리소홀 9. 직권남용 가.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및 권리행사 나. 직명사칭 10. 행정운영상의 위법부당 가. 직무명령위반 나. 정치운동 및 집단허위 (1) 형사상기소 (2) 훈방, 기타 변금등 다. 기타 중대한 파고 11. 예산 및 회계관리의 부적정 가.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나. 예정가격조서의 위법부당작성 다. 위법부당한 입찰 및 낙찰 라. 물품 및 공사의 부당분할 받주계약등 위법부당계약	파면	해임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파면				견책 이상	
						견책 이상	
					감봉 이상		

구분	징계사유	징계기준					비고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마. 위법부당한 검수 및 계약 바. 위약금의 불징수 기타 손실초래 사. 허위지출 증빙서 작성 아. 공과금의 부당관리 차. 기타 퇴계상의 부정(교의과실등 참작 적용)				감봉이상		
	12. 물품 및 시설물관리 부적정 가. 물품, 재산의 낭실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시설물 훼손 다. 물품관리 소홀 라. 관용차 남용				감봉이상	견책이상	
	13. 공사시공관리 가. 공사계획 및 설계 (1) 공사진행시기부적정 (2) 공사속도및규모부당설계 (3) 공사수량및단가과다설계 나. 공사시공감독 (1) 공사용관급자재취급소홀 (2) 공사용자재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3) 주요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피발생(건설업법 및 시행령 참조)				견책이상	견책이상	
					감봉이상		

구 분	정 제 사 유	정 제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5. 건축 및 주택	5. 수수료, 수입금 관리 불철저 6. 분뇨및 전개수거 불철저 7. 정화조 허가준공위법부당처리 8. 배출시설 설치허가 위법부당처리 9. 환경업소 사후관리 불철저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건축허가준공 가. 위법부당건축허가(사업승인) 및 준공검사(중간검사) 나. 구조의 안전확인 및 불완전한 건물의 준공 다. 불완전한 대지상의 허가 및 준공 라. 방화시설 내화구조 위반 마. 주차시설위반 바. 피난시설 소화설비기준위반 사.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도로내의 개한규정위반 아. 부당하게 도로의 폐지 및 변경 자. 건축선위반 차. 용도지역 및 지구위반 카. 전폐율, 용적율위반 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대지안의 공지위반 파. 건축물의 높이위반				감봉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견책 이상	

구분	정 계 사 유	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정직	감봉	전석	
	하. 기타 및 타법령 위반 2. 건축행정 및 건축물 관리태만 가. 건축심의 처리소홀 나. 관계부서와의 협의부적절 다. 위법건축물의 조치태만 라. 건축물의 안전 및 방재 불철저 아. 건축사지도감독 불철저 3. 시영주택 및 민영주택관리 가. 시영주택 입주자 선정 불철저 나. 시영주택관리 불철저 다. 민영주택 사후관리 불철저 4. 무허가건물관리 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 단속 태만 나. 불철저, 불완전 철거 다. 합숙원도 관리부적절 리. 합숙판독 건물 부당처리 (1) 기존건물로 부당조사 철거 제외 (2) 부대시설로 부당조사 철거 제외 (3) 비건물로 부당조사 철거 제외				전석 이상 전석 이상 " " " " 감봉 이상 감봉 이상 전석 이상 " 전석 이상 감봉 이상 전석 이상 감봉 이상 " " " 		

구 분	징 제 사 유	징 제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4) 공공, 공익건물로 부당조사 철폐외 (5) 행정조치 (미화지시, 재개발, 현지개발, 가수용등) 건물로 부당조사철폐외 (6) 소털로 허위조사 철폐외 (건물로 볼 수 있는 경우) (7) 신고위반, 허위위반건물로 신고 또는 허가취소된 건물을 적법건물로 부당처리 (8) 기한부 신고로 처리후 계속 방치 나. 표본조사등 사후관리및 행정지도 태만 다. 추인허가등 부당처리 라. 지상촬영 제출 위반건물 조치 부적정				감봉 이상 " " " " 감봉 이상	견책 이상 " 견책 이상	
6. 상수도	1. 점검용역회사 지도감독 부적정 2. 관리점검소홀 3. 추정조장 부인 4. 양수기 조작 5. 심사부당 6. 양수기부당교체 7. 부정급수 단속 소홀		해임 이상	정직 이상	견책 " " 견책 이상 견책 이상	용역 직원 은 회사 자체조치 실시	

구분	징 제 사 유	징 세 기 준				비 고
		파 면	해 임	정 직	감 봉 전 책	
	8. 무허가 금수업자 방치				감봉 이상	
	9. 조폐위반사항 조치 부적절				"	
7. 산업 행정	1. 부정 계량기 단속 불철지					전 책 이상
	2. 급수우등 부정도축 묵인				감봉 이상	
	3. 밀도살 방치				"	
	4. 시장위법부당 허가				"	
	5. 시장 지도감독 소홀					전 책 이상
	6. 연탄제조업소 지도 소홀					전 책 이상
	7. 열사온 기자재제조업 부당허가				감봉 이상	
	8. 전기용품 부당제조 면허				"	
	9. 도시가스 요금 부당 조정				"	
	10. 도시가스 안전관리 소홀				"	
	11. 정부양곡 방출 지정부당				"	
	12. 보관창고 부당 지정					전 책 이상
	13. 혼분식 단속 묵인				"	
	14. 양곡상 소규모 양곡가공업 등 부당허가				감봉 이상	
	15. L.P.G 및 주유소, 판매소 부당 허가				"	
	16. 제조, 판매업소 사후관리 불철지					전 책 이상
	17. 기타 부정행위.					"

구 분	징 제 사 유	징 제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9. 구조변경 승인 부적정				감봉 이상		
	10. 노선부당 결정 및 변경				"		
	11. 정류소설치 및 이전 부적정					견책 이상	
	12. 사고인가 부적정					"	
	13. 연료변경인가 부적정				감봉 이상		
	14. 대패차 변경 인가등 업무처리 부당				"		
	15. 개인, 한시택시 명의변경 부당				"		
	16. 증차인가 부당처리				"		
	17. 차동차검사 등록 부적정					견책 이상	
	18.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관리 부적정					"	
	19. 국내여행 알선업 위법부당 허가				감봉 이상		
	20. 관광협회 및 안내소운영 지도감독 불철저					견책 이상	
	21. 관광숙박업 및 관광이용시설업 위법부당 등록				감봉 이상		
10.도 시및 건설 행정	1. 환지처분의 부적정				감봉 이상		
	2. 도로, 하천, 구거공작물 설치허가 및 준공검사 부적정				"		
	3. 보상금 지급 부적정				"		
	4. 도로, 하천, 구거용지 점용허가 및 관리 부적정					견책 이상	

구분	징 제 사 유	징 제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5. 도로, 하천등 점용 과징 불 철저 6. 가로계획 변경의 부적정 7. 도시계획지역 지구별 변경의 부적정 8. 토지형질 변경의 부적정				감봉 이상 " "	견책 이상	
11. 지 하철 운영	1. 운전행위 대령 2. 신호위반 열차운행 3. 운전석 및 차장석, 일반인 승 차 묵인 4. 정상운임 착복 (영수증 미발급) 5. 승차권 새 사용 6. 정기승차권 부정 발급 7. 운전여객사고 허위보고				감봉 이상 감봉 이상 " " " "	견책 이상 견책 이상	
서울특별시 제 1 회 지하철공채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 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		◎ 서울특별시규칙제 1923 호 서울특별시제 1 회 지하철공채 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제 1 회 지하철공채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1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구방공위원회 규칙 제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영수인
1981년 11월 4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924 호

서울특별시구방공위원회규칙 제지규칙

서울특별시 구방공위원회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시정개발담당관운영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영수인
1981년 11월 4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925 호

서울특별시시정개발담당관운영규칙폐지(안)

서울특별시시정개발담당관운영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1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장 구본길인

◎ 교육규칙제 248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중 부칙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선임인용시 연령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저직중인 지방잡급직원으로서 지방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고용원규칙 제 3 조제 3 항의 연령제한 규정을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인사사무처령규칙 제 8 조의 연령제한 규정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그 적용기한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한 한다.

부 칙 ('8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392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주택건설촉진법제 33 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66 번지 외 88
필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아파트및 부대시설) 하고 동법제 33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1.10.28.

서울특별시장

1.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설정조서 (도면생략)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2	1	8	263	대치동 73-2	대치동 61-6	폭원확장
변경	중로	3	1	15	263	" "	" "	
폐지	소로	2	2	8	204	" 18-12	" 73-4	
"	"	2	3	8	202	" 50-36	" 66	
"	"	2	4	8	132	" 66	" 57-7	
"	"	2	5	8	84	" 57-7	" 51-3	
"	"	3	1	6	138	" 8-3	" 66	

◎ 서울특별시고시제 393 호

주택개량을위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및건축
계획 승인

1.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관리
처분계획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공고제 210 호 (81.8.10)
로 공람공고한 신길 2 구역중 일부
지구 (1, 2, 3, 4, 6, 7, 8, 10, 12, 13,

14, 15 구획) 에 대하여 도시재개발
법 제 41 조 및 동법 시행령제 7 조
와 건축법제 33 조의 2 및 동시행령
제 5 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건축계획을 승인함.

2. 본 내용을 토지 및 건축물소유
자에게 개별 통보하여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건축국 재개발 2 과와 관
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주택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가. 건축계획				
1) 건축물의 규모				
구분	층 수	세대당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단독주택	2층	50 이상	50% 이하	200% 이하
공동주택	2 "	40	50%	150%
"	3 "	40	35%	150%

<p>2) 기타사항은 동구역 건축계획 승인서와 건축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함.</p> <p>나. 관리처분계획 : 기재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1981.11.2.</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p>◎서울특별시 고시제 394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사업 (종합의료시설) 시행허가</p> <p>1. 서울특별시 고시제 299 호 (79.7.4) 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구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가환지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제 463 호 (79.12.10) 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종합의료시설) 시행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장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1.10.31</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p>1. 사업시행지 : 구로구 구로동 339-27 일대 (구로토지구획정리지구 1가)</p> <p>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종합의료시설)</p> <p>3.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시장북구안암동 5가 1번지의 2</p> <p>성명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사장이 됨</p> <p>4. 사업시행규모 : 대지면적 40,992㎡ 건축면적 4,581㎡ 연건축면적 20,305㎡</p> <p>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착 수 : 1981.11 준공예정년월일 : 1983.12.31</p> <p>6.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별첨생략)</p>
--	---

◎ 서울특별시고시제 395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변경)

- 1. 서울특별시고시제 334 호 (79.7.26)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된 당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을 도시계획법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제 463 호 (79.12.10)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10.31.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 성북구하월곡동 23-1 산 2-88, 산 2-90 번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동덕여대
- 다. 면적 및 규모
변경전 : 5,588㎡ (1,690 평)
변경 : 일부구조물
- 라. 사업자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하월곡동 23-1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장 조용각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전 : 1979.11.20-1981.10.31

변경 : 1979.11.20-1982.3.31

- 바. 위치및계획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
- 사. 공사설계도면 : 별첨 (도면생략)
- *도면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보관.

◎ 서울특별시고시제 396 호

도시계획 (학교) 사업시행허가 (변경)

- 1. 서울특별시고시제 61 호 (81.2.19)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된 당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을 도시계획법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제 463 호 (79.12.10)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10.31.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 성북구돈암동 184-127 외 18 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한성여중, 고) 학생 실습실 (실험) 신축부지
- 다. 면적 및 규모
변경전 : 2,970㎡
변경 : 일부구조물변경

라. 시행자주소성명 : 성북구삼선동2가
389번지 학교법인 한성학원
이사장 김 의 영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전 : 80.3.15-81.10.31.
변 경 : 80.3.15-81.12.30.

바. 위치및계획평면도 : 별첨 (도변생략)
사. 공사설계도면 : 별첨 (도면생략)
* 도면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보관

◎서울특별시고시제 397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09 호 (81.4.7) 로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되고 동고시제 186 호 (81.5.25) 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10.31.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시행지 : 서울시성동구중곡동
191-70 의 4 필지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o 종류 : 도시계획사업 (학교)
- o 명칭 : 서울중마국민학교

3. 사업의 규모

- o 면적 : 8,549 평방미터 (2,566 평)
- o 연건평 : 5,022 평방미터 (교사 2 동 1130.25, 별소 2 동 94.5 4 층) (참고 1 동 74.25 1 층)

4. 사업시행자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o 착수 : 81.11.25.
- 준공 : 82.11.24.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차의 권리명세 : 생략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98 호

하천점용 (지하철 4 호선동작정차장) 풍작물설치허가

다음과같이 하천점용 (지하철동작정차장설치) 허가를 하천법 제 25 조 1 항 동조 2 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허가하였으므로 고시한다.

1981.11.2

서울특별시장

허가년 월 일	위 치	점용면적	점 용 목 적	피허가자주소, 성명
81.10.31	서울동작구동작동 327-1	6,600㎡	지하철중좌정차 장설치	서울시중구외주로 1가1번지지하철 공사사장 김재명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289 호

특정 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취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0 조 규

○ 지정취소업체명

정에 의거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
업 지정을 취소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 28 조에 의거 다음과같이 공고한다

1981.10.31

서울특별시장

지정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위 반 내 용
중구제46호	금한실업(주)	오창억	서울중구명동 2가 32-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2 조제 1 항위반

◎서울특별시공고제 292 호

도시계획사업 (유통업 무설비)
준공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692(78.12.30) 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529(79.12.26) 호로 도시계획사업(유통업 무설비) 시행허가된 유통업 무설비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었기
건설부고시 제 463 호(79.12.10) 의
권한위임 및 도시계획법 제 85 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유통업

무설비) 완료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인다.

1981.11. 3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구로구구로동 604-7 의 23 필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 사업

(유통업무설비) 영등포 기계공구
상업단지

다. 사업면적 : 74,939 ㎡

라. 사업자 주소와성명 : 구로구구로
동 604 번지 영등포 기계상업단지
이사장 유 종 대

마. 사업의허가 및 준공년월일

허가년월일 : 1978.12.30.

준공년월일 : 1981.11. 3

◎서울특별시공고제 294호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예정지
변경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 제 270 호로 환지
계획 변경공람공고한 잠실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일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9 조 규정에 의거 환지
계획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버
경 지정공고한다.
2. 환지예정지 변경도서는 도시계획
국 구획정리과와 강동구청서민봉사
실에 비치하여 보이고 있으며,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
도 통지한다.

1981.11.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환지예정지변경내역)

가. 사업명 :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

나. 변경면적 : 64,943.7 평

다. 변경위치 : 강동구방이동 90 번지
외 124 필

라. 변경내용 : 사업계획일부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도서는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295호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예정지
변경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 제 260 호로 환지
계획 변경공람공고한 잠실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 일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
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9 조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
지 변경 지정공고한다.
2. 환지예정지 변경도서는 도시계획
국 구획정리과와 강동구청 서민봉사
실에 비치하여 보이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한다.

1981.11.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환지예정지변경내역)

가. 사업명 :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
나. 변경면적 : 5,739.6 평
다. 변경위치 : 강동구잠실동 64외 2
의 63필

· 변경내용 : 사업계획 일부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도서는 생략)

사 령

○ 1981년 10월 31일자 령제 430 호

의 약 과 양 동 주
지방행정사무관

사회정화위원회 파견근무를 명함.
(81.10.31 - 82.10.30)

○ 1981년 11월 2일자 령제 431 호

강서구새마을과 김 이 기
지방행정주사

연로과 근무를 명함.

은평구산업과 부 성 철
지방행정주사

연로과 근무를 명함.

○ 1981년 10월 30일자 령제 432 호

연 로 과 최 영 진
서 기 관

국가공무원법 제 73조의 2제 1항 제 4호
의 규정에 의거 그직을 해제함.

○ 1981년 11월 5일자 령제 433 호

감 사 원 이 슬 영
감 사 주 사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입함.
강동구 근무를 명함.

감 사 원 이 중 천
감 사 주 사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입함.
강남구 근무를 명함.

감 사 원 김 락 운
감 사 주 사 보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입함.
중구 근무를 명함.

감 사 원 이 태 석
감 사 주 사 보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입함.
종구 근무를 명함.

○ 1981년 11월 1일자 령제 434 호

내 무 국 원 지 연
자 방 서 기 관

부직을 명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 1981년 11월 3일자령제 435 호

재개발 2과 조태종
지방건축기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1981년 11월 4일자령제 436 호

급수과 박호식
지방토목기사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서울특별시장